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45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조명희·한무경·추경호

홍문표 • 백종헌 • 성일종

윤두현 · 서정숙 · 김영식

박 진 · 정경희 · 권영세

신원식 · 이종성 · 최승재

강기유 · 강대식 · 하영제

이주환 • 윤창현 • 윤주경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상호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술 또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에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같이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융합 승차서비스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 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심의사항 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 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
치 등) ①・② (생 략)	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